

# 일본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소비세제

이 창 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1. 서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없고 국세중심의 조세체계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확충의 여지가 거의 없다. 법으로 정한 법정세 외에는 과세할 수 없고 다만, 세율에 대해 일부 탄력세율 적용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특별소비세 도입 등 신세원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근 주요 외국의 경우, 과세자주권 활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 및 지방분권의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법정외보통세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세를 신설할 수 있는 가운데 나아가 최근에는 법정외목적세까지 도입하고 있는 상황은 깊이 새겨볼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및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과세자주권의 활용 사례가 증대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특별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일본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소비관련 지방세의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 II.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 동향

### 1. 과세자주권의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논점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세자주권에 관해서는 지방분권추진의 일환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세율의 자주설정 및 법정외세 강화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과세자주권을 활용하는 것은 이를 계기로 주민의 수익과 부담의 대응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의식되게 하여 주민의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이나 참가의식의 제고를 기대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는 지방분권추진의 일환으로 과세자주권의 존중, 주민의 수익과 부담의 명확화, 과세선택 폭의 확대 등의 관점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이 행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세율의 자주적인 설정으로서 개인 시정촌민세균등할 및 소득할의 제한세율의 폐지, 둘째, 개인 도부현민세소득할에 있어서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에로의 사전신청 등의 폐지가 행해졌다(1998년도 지방세법개정).

한편, 일본의 경우는 법정외세 제도를 통하여 자주재원확충 및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법정외세제도는 지방세법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 독자적인 세를 신설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정외세에 대해서는 첫째, 국가 허가제에서 국가의 동의를 요하는 협의제로 개정. 둘째, 적극적 허가제로 되어 있었던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의 존재] 및 [세수입을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의 존재]라는 동의요건의 제외. 셋째, 법정외목적세의 신설이 이루어졌다(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한 지방세법 개정, 2000년 4월1일). 이중 법정외세에 대한 협의제의 이행은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대등 혹은 협력의 관계로 이행하는 관점에서 개정된 것이다.

### 2. 자주재원확충 및 과세자주권 확대 수단으로서의 법정외세

#### 가. 법정외세제도의 의의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정한 법정세 외에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세원을 받

굴하여 과세할 수 있다. 총무성장관은 첫째, 국세 또는 다른 지방세와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하고 나아가 주민의 부담이 현저하게 과중되는 일(제1호요건). 둘째, 지방자치단체간에 있어서 物의 유통에 중대한 장애를 부여하는 일(제2호요건). 셋째, 위의 사항에 제시된 것 외에도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는 것(제3호요건) 중에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외세제도 신설에 중앙정부는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외세는 해당 지역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법정세 이외의 세원에 착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첫째, 원인자부담금 혹은 수익자부담금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둘째, 지역에 특별한 세원이 존재하고 법정세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등의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정외세제도 활용의 범위로서 주목되고 있는 등 지방자치에 있어서 과세자주권의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정외세는 원칙적으로 주요 세원이 법정의 국세 혹은 지방세에 의해 이미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세원포착 한계 및 많은 세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다.

#### 나. 법정외세와 소비세제와의 관계

개별소비세는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세원의 지역으로의 귀속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방세로서 부과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독일에서는 시군구 독자과세는 지역적소비세·지출세이다. 부가가치세와의 관계에서는 과세의 취지나 과세표준 등이 다르므로 2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시군구 독립과세로서 호텔의 숙박등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와의 2중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체제세나 독일의 보양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본에서도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적소비세·지출세를 신설하는 것도 2중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법정외세로서 부과할 수 있다.

#### 다. 법정외세 종류 및 지방재정상의 지위

일본의 법정외세는 법정의 보통세와 법정의 목적세로 구분되고 있다. 2004년 결산기준으로 법정외세는 516억엔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0.15%를 점하고 있다. 도도부현세 수입 및 시정촌세 수입 전체에서 법정외세가 점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나 최근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도도부현에서는 福井縣의 핵연료세가 4.4%. 시정촌에서는 熱海市の 별장등 소유세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현재 도도부현의 법정외세는 8개 세목에서 42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고 시정촌에서는 10개 세목에서 28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법정외세 현황(2006년 4월 현재)

| 2002년도 결산액 516 억엔 (지방세수액에 차지하는 비율 0.15 %) |      |                           |                                                                     |                                                                                                                                                              |     |
|-------------------------------------------|------|---------------------------|---------------------------------------------------------------------|--------------------------------------------------------------------------------------------------------------------------------------------------------------|-----|
| (2004년도 결산액) [단위 : 억엔]                    |      |                           |                                                                     |                                                                                                                                                              |     |
| 법정외<br>보통세                                | 도도부현 | 석유가격조정세                   | 오кина와현                                                             | 10                                                                                                                                                           |     |
|                                           |      | 핵연료세                      | 후쿠이현, 후쿠시마현, 에히메현, 사가현, 시마네현, 시즈오카현, 카고시마현, 미야기현, 니가타현, 홋카이도, 이시카와현 | 139                                                                                                                                                          |     |
|                                           |      | 핵연료등 취급세                  | 이바라키현                                                               | 15                                                                                                                                                           |     |
|                                           |      | 핵연료물질등 취급세                | 아오모리현                                                               | 131                                                                                                                                                          |     |
|                                           |      | 임시특례기업세                   | 카나가와현                                                               | 156                                                                                                                                                          |     |
|                                           |      | 계                         | 15건                                                                 | 451                                                                                                                                                          |     |
|                                           | 시정촌  | 자갈 채취세등                   | 조요우시(교토부) , 나카이마치(가나가와현), 산보쿠마치(가나가와현)                              | 0.5                                                                                                                                                          |     |
|                                           |      | 별장등 소유세                   | 아타미시(시즈오카현)                                                         | 6                                                                                                                                                            |     |
|                                           |      | 역사와 문화의 환경세               | 다자이후시(후쿠오카현)                                                        | 0.3                                                                                                                                                          |     |
|                                           |      | 사용필 핵연료세                  | 사츠마 센다이시(가고시마현)                                                     | 2                                                                                                                                                            |     |
| 법정외<br>목적세                                | 도도부현 | 협소 맨션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 집합주택세 | 토시마구(도쿄도)                                                           | 1                                                                                                                                                            |     |
|                                           |      | 계                         | 7건                                                                  | 10                                                                                                                                                           |     |
|                                           |      | 합계                        | 22건                                                                 | 461                                                                                                                                                          |     |
|                                           |      | 시정촌                       | 산업 폐기물세등                                                            | 미에현, 시가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돗토리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아키타현, 나라현, 야마구치현, 니가타현, 교토부, 미야기현, 시마네현, 쿠마모토현, 후쿠시마현, 아이치현, 오кина와현, 홋카이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카고시마현, 미야자키현 | 30  |
|                                           |      |                           | 숙박세                                                                 | 도쿄도                                                                                                                                                          | 12  |
|                                           |      |                           | 乗鞍환경보전세                                                             | 기후현                                                                                                                                                          | 0.2 |
|                                           | 계    |                           | 27건                                                                 | 42                                                                                                                                                           |     |
|                                           | 시정촌  | 遊漁세                       | 후지 카와구치코마치(야마나시현)(*3)                                               | 0.3                                                                                                                                                          |     |
|                                           |      | 일반 폐기물 매립세                | 타지미시(기후현)                                                           | 0.5                                                                                                                                                          |     |
|                                           |      | 환경 미래세                    | 키타큐슈시(후쿠오카현)                                                        | 8                                                                                                                                                            |     |
| 사용필 핵연료세                                  |      | 카시와자키시(니가타현)              | 5                                                                   |                                                                                                                                                              |     |
| 방치 자전거등 대책 추진세                            |      | 토시마구(도쿄도)                 | —                                                                   |                                                                                                                                                              |     |
| 환경 협력세                                    |      | 이제나손(오кина와현)             | —                                                                   |                                                                                                                                                              |     |
| 계                                         |      | 6건                        | 14                                                                  |                                                                                                                                                              |     |
| 합계                                        | 33건  | 55                        |                                                                     |                                                                                                                                                              |     |

### 3. 지방소비세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일본은 2002년부터 [三位一體 改革]의 일환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3조엔의 세원이양을 실현하고 있다. 삼위일체 개혁이란 고이즈미(小泉)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 및 세제에 관한 개혁으로서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국고 보조부담금의 삭감], [지방교부세의 개혁], [세원이양]이라는 3개의 개혁을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삼위일체 개혁은 지방의 세제 및 재정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권한과 조직을 완고하게 지키려는 중앙부처의 벽이 너무 두터워 3조엔의 세원이양은 실현되었어도 국고보조부담금의 폐지, 국가의 관여는 축소되지 않아 지방의 자유도는 높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새로이 [신지방분권구상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차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동위원회에서 지방재정자립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하나의 수단으로 지방소비세를 강화하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편재성이 적은 거주지과세인 지방소비세와 개인주민세를 강화하여 지방공유세(지방교부세)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세금으로 자주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 ① 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현행 4대1에서 2.5대2.5로 한다.
- ② 소득세를 주민세로 세원이양하고 개인주민세소득할을 3% 높인다.

둘째, 지방세는 지역편재성이 비교적 적은 세목으로 구성하고 지방공유세(지방교부세)의 原資는 지역편재성이 비교적 큰 세목으로 구성한다.

셋째, 이에 근거하여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을 5대5로 한다.

특히, 현재 일본의 지방세중 도도부현세의 특징은 주민이 부담하는 개인주민세나 지방소비세라는 거주지과세의 비중이 낮고 법인소득과세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우선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기간세인 소비세는 대인서비스에 응익적으로 대응하는 거주지과세이고 게다가 경기변동에 의해 신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편재성이 적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이 균등하게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독일 기본법에서 [자치의 보장은 재정상의 자기책임의 기반까지도 포함한다]라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하고 있는 동시

에 독자적인 지방소비관련세의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군구예로의 세원의 배분에 대해서는 첫째, 공동세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로부터 배분. 둘째, 독립세로서는 물세인 영업세 및 부동산세와 함께 지역적 소비세·지출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기본법제105조제2a항에서는 [주는 지역적소비세·지출세가 연방법에서 규정된 세와 동종이 아니고 또한 그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이들 조세에 대해 입법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106조제6항에서는 [물세의 수입은 시군구에 귀속하고 지역적소비세·지출세는 시군구 혹은 주의 입법기준에 따라 시군구조합에 귀속한다. 지역적소비세·지출세(시군구독자과세)로서는 현재 오락세, 犬세, 부차적주거세, 수렵세, 음료세 등이 과세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과세자주권의 확대 및 자주재원확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III. 일본의 자주재원으로서의 지방소비세제

#### 1. 지방소비관련세의 비중

##### 가. 지방세 규모 및 구성비율

일본의 지방세는 2006년 지방재정계획액 기준으로 소비관련세를 포함하여 주요 14개 세목에 규모는 34조 9천억엔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도부현세가 44.2%, 시정촌세가 55.8%로 시정촌세가 다소 높다.

〈표2〉 지방세수의 구성 (2006년도 지방재정계획액 기준)

| 세목       | 금액(억엔)  | 구성비(%) |
|----------|---------|--------|
| 도부현세     | 154,308 | 44.2   |
| 개인도부현세   | 26,117  | 7.5    |
| 도부현민세이자할 | 1,029   | 0.3    |
| 법인도부현민세  | 8,827   | 2.5    |
| 법인사업세    | 48,469  | 13.9   |
| 지방소비세    | 26,343  | 7.5    |
| 자동차세     | 17,659  | 5.1    |
| 경유인수세    | 10,820  | 3.0    |
| 도부현담배세   | 2,848   | 0.8    |
| 부동산취득세   | 4,828   | 1.4    |
| 기타       | 7,568   | 2.2    |

|         |         |       |
|---------|---------|-------|
| 시정촌세    | 134,675 | 55.8  |
| 개인시정촌민세 | 61,486  | 17.6  |
| 법인시정촌민세 | 22,847  | 6.5   |
| 시정촌담배세  | 8,750   | 2.5   |
| 고정자산세   | 83,912  | 24.0  |
| 도시계획세   | 11,723  | 3.4   |
| 기타      | 5,957   | 1.7   |
| 지방세수 계  | 348,983 | 100.0 |

- 주) 1. 「개인 도부현민세」는, 배당비율 및 주식 등 양도소득비율을 포함  
 2. 「고정 자산세」는, 토지, 가옥, 상각 자산의 합계

#### 나. 지방소비관련세의 종류 및 지위

일본의 지방소비관련세는 직접세로서는 자동차세, 경자동차세, 광산세, 수렵세, 광구세 등이 있고 간접세로서는 지방소비세, 지방담배세, 경유인수세, 자동차 취득세, 골프장 이용세, 입탕세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과세는 7조 3천억원 수준으로 지방세수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표3〉 지방소비관련세의 구성 및 비중

(단위 : 억엔, %)

| 구분    | 소득 과세                                           | 소비 과세                                                | 자산 과세 등                                      | 합계             |
|-------|-------------------------------------------------|------------------------------------------------------|----------------------------------------------|----------------|
| 지방세계  | 154,061(45.9)                                   | 72,668(21.7)                                         | 108,659(32.4)                                | 335,388(100.0) |
| 도부현세  | 77,375(53.4)                                    | 62,273(43.0)                                         | 5,222( 3.6)                                  | 144,870(100.0) |
| 시정촌세  | 76,686(40.3)                                    | 10,395( 5.5)                                         | 103,437(54.3)                                | 190,518(100.0) |
| 직접세   | 개인 주민세<br>법인 주민세<br>주민세 이자할<br>개인 사업세<br>법인 사업세 | 자동차세<br>경자동차세<br>광산세<br>수렵세<br>광구세                   | 고정자산세<br>도시계획세<br>사업소세<br>특별토지보유세<br>수리이익세 등 | 276,273 (82.4) |
| 간접세 등 |                                                 | 지방소비세<br>지방담배세<br>경유인수세<br>자동차 취득세<br>골프장 이용세<br>입탕세 | 부동산 취득세                                      | 59,115 (17.6)  |

- 주) 1.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 등의 구분은 OECD 세입 통계의 구분  
 2. 세수입액은, 2004년도 결산액  
 3. 도부현세에 있어서 구법에 따르는 세(특별 지방소비세를 포함한다.) 1억엔은, 소비과세·간접세 등에 포함  
 4. 법정외세는 자산과세 등 간접세 등에 포함

## 2.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도도부현세로서 일본의 소비관련 지방세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목이다. 2004년 결산기준으로 2조 6천억원으로 지방세수의 약 8% 수준을 점하고 있다.

| 항목                                                        | 내 용                                                                                                                                                                                                                                                                                                                                                |    |    |                                                           |     |                   |     |                   |     |
|-----------------------------------------------------------|----------------------------------------------------------------------------------------------------------------------------------------------------------------------------------------------------------------------------------------------------------------------------------------------------------------------------------------------------|----|----|-----------------------------------------------------------|-----|-------------------|-----|-------------------|-----|
| 1. 과세 주체                                                  | 도도부현                                                                                                                                                                                                                                                                                                                                               |    |    |                                                           |     |                   |     |                   |     |
| 2. 납세의무자(양도비율)<br>(화물비율)                                  | 과세 자산의 양도등을 실시한 사업자<br>과세 화물을 보세지역(외국 화물을 수입 신고전에 장치 할 수 있는 장소)으로부터 인수하는 사람                                                                                                                                                                                                                                                                        |    |    |                                                           |     |                   |     |                   |     |
| 3. 과세 방식(양도비율)<br>(화물비율)                                  | 당분간 국가(세무서)에 소비세와 아울러 신고 납부(본래는 도도부현에 신고 납부)<br>국가(세관)에 소비세와 아울러 신고 납부                                                                                                                                                                                                                                                                             |    |    |                                                           |     |                   |     |                   |     |
| 4. 과세표준                                                   | 소비세액                                                                                                                                                                                                                                                                                                                                               |    |    |                                                           |     |                   |     |                   |     |
| 5. 세율                                                     | 100 분의 25 (소비세율 환산 1%)                                                                                                                                                                                                                                                                                                                             |    |    |                                                           |     |                   |     |                   |     |
| 6. 세수입(2004년도 결산액)                                        | 26, 139억엔                                                                                                                                                                                                                                                                                                                                          |    |    |                                                           |     |                   |     |                   |     |
| 7. 청산                                                     | 지방소비세 상당액에 대해, 최종 소비지에 세수입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소비에 관련한 기준에 의해서 도도부현간에 청산 <table border="1"> <thead> <tr> <th>지표</th><th>비중</th></tr> </thead> <tbody> <tr> <td>「소매 연간 판매액수(상업 통계)」와 「서비스업 대비 개인 사업 수입액(서비스업 기본 통계)」의 합산액</td><td>6/8</td></tr> <tr> <td>「인구(국세조사)」</td><td>1/8</td></tr> <tr> <td>「종업원수(사업소·기업 통계)」</td><td>1/8</td></tr> </tbody> </table> | 지표 | 비중 | 「소매 연간 판매액수(상업 통계)」와 「서비스업 대비 개인 사업 수입액(서비스업 기본 통계)」의 합산액 | 6/8 | 「인구(국세조사)」        | 1/8 | 「종업원수(사업소·기업 통계)」 | 1/8 |
| 지표                                                        | 비중                                                                                                                                                                                                                                                                                                                                                 |    |    |                                                           |     |                   |     |                   |     |
| 「소매 연간 판매액수(상업 통계)」와 「서비스업 대비 개인 사업 수입액(서비스업 기본 통계)」의 합산액 | 6/8                                                                                                                                                                                                                                                                                                                                                |    |    |                                                           |     |                   |     |                   |     |
| 「인구(국세조사)」                                                | 1/8                                                                                                                                                                                                                                                                                                                                                |    |    |                                                           |     |                   |     |                   |     |
| 「종업원수(사업소·기업 통계)」                                         | 1/8                                                                                                                                                                                                                                                                                                                                                |    |    |                                                           |     |                   |     |                   |     |
| 8. 교부금                                                    | 세수입(청산 후)의 2분의 1을 시정촌에 교부. 인구와 종업원수로 안분 <table border="1"> <thead> <tr> <th>지표</th><th>비중</th></tr> </thead> <tbody> <tr> <td>「인구(국세조사)」</td><td>1/2</td></tr> <tr> <td>「종업원수(사업소·기업 통계)」</td><td>1/2</td></tr> </tbody> </table>                                                                                                                  | 지표 | 비중 | 「인구(국세조사)」                                                | 1/2 | 「종업원수(사업소·기업 통계)」 | 1/2 |                   |     |
| 지표                                                        | 비중                                                                                                                                                                                                                                                                                                                                                 |    |    |                                                           |     |                   |     |                   |     |
| 「인구(국세조사)」                                                | 1/2                                                                                                                                                                                                                                                                                                                                                |    |    |                                                           |     |                   |     |                   |     |
| 「종업원수(사업소·기업 통계)」                                         | 1/2                                                                                                                                                                                                                                                                                                                                                |    |    |                                                           |     |                   |     |                   |     |

## 3. 지방담배세(도부현 담배세 및 시정촌 담배세)

- ① 과세 주체 : 소매 판매업자의 영업소등 소재의 도도부현 및 시정촌
- ② 과세 객체 : 제조 담배
- ③ 납세의무자 : 제조 담배에 대해, 소매 판매업자 혹은 소비자등에 매도하거나, 또는 소비

등을 하는 제조 담배의 제조자, 특정 판매업자 및 도매 판매업자

④ 과세표준: 제조 담배의 갯수

⑤ 세율

| 구분      | 제조 담배           | 제조 담배( 구3급품)    |
|---------|-----------------|-----------------|
| 도부현 담배세 | 1,000개당 969 엔   | 1,000개당 461 엔   |
| 시정촌 담배세 | 1,000개당 2,977 엔 | 1,000개당 1,412 엔 |
| 계       | 1,000개당 3,946 엔 | 1,000개당 1,873 엔 |

⑥ 징수 방법: 신고 납부

⑦ 세수입 (2004년도 결산액): 11, 506 억엔(도도부현 2, 826억엔, 시정촌 8, 680억엔)

#### 4. 골프장 이용세

| 항목                  | 내 용                                                      |
|---------------------|----------------------------------------------------------|
| 1. 과세 주체            | 도도부현                                                     |
| 2. 과세 객체            | 골프장의 이용 행위                                               |
| 3. 납세의무자            | 골프장의 이용자                                                 |
| 4. 세율               | 표준세율 1명 1일당 800엔<br>제한세율 1,200엔                          |
| 5. 교부금              | 수입액 중 10 분의 7에 상당하는 액수를, 골프장 이용세를 납입한 골프장이 소재 하는 시정촌에 교부 |
| 6. 세수입 (2004년도 결산액) | 638억엔                                                    |

#### 5. 자동차세

| 항목       | 내 용                                                                                                                                                                                                                   |
|----------|-----------------------------------------------------------------------------------------------------------------------------------------------------------------------------------------------------------------------|
| 1. 과세 주체 | 도도부현                                                                                                                                                                                                                  |
| 2. 납세의무자 | 자동차의 소유자 (판매측이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는, 판매주)                                                                                                                                                                                 |
| 3. 과세 방식 | <p>〈 과세 객체 〉<br/>자동차 (이륜의 소형자동차, 경자동차, 대형 특수 및 소형 특수 자동차를 제외)</p> <p>〈 납기 〉<br/>5월중에 있고,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한다.</p> <p>〈 징수 방법 〉<br/>보통 징수의 방법에 따른다.(다만, 신규 등록에 의해, 연도 도중( 2월말까지)에 월평균으로 징수하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증지 징수의 방법에 따른다.)</p> |

|                        |                                                                                                                                                                                                                                       |
|------------------------|---------------------------------------------------------------------------------------------------------------------------------------------------------------------------------------------------------------------------------------|
| 4. 세율                  | < 표준 세율 ><br>자동차의 종별, 배기량 별로 설정<br>< 제한세율 ><br>표준 세율의 1.5 배<br>< 그린화에 의한 특례 세율 ><br>배출 가스 성능 및 연비 성능이 뛰어난 환경 부하가 작은 일정 자동차의 세율을 경감하고, 신차신규 등록으로부터 일정 연수를 경과한 환경 부하가 큰 자동차의 세율을 무겁게 하는 특례 조치(이른바 「자동차세의 그린화」)를, 세수입 중립을 전제로 2001년도에 신설 |
| 5. 세수입<br>(2004년도 결산액) | 1조 7, 131 억엔                                                                                                                                                                                                                          |

## 6. 자동차 취득세

| 항목                     | 내 용                                                                                                                                                                                                                                                                                    |
|------------------------|----------------------------------------------------------------------------------------------------------------------------------------------------------------------------------------------------------------------------------------------------------------------------------------|
| 1. 과세 주체               | 도도부현                                                                                                                                                                                                                                                                                   |
| 2. 납세의무자               | 자동차의 취득자 (판매측이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는, 판매주)                                                                                                                                                                                                                                                  |
| 3. 과세 방식               | < 과세 객체 ><br>자동차의 취득 (이륜의 소형자동차, 이륜의 경자동차, 대형 특수 및 소형 특수 자동차를 제외)<br>< 신고·납부 ><br>신고 납부에 의한다. 신고서에 증지를 붙이는 것으로 납부<br><b>【신고서의 제출 기한】</b><br>・ 신규 등록, 신규 검사 또는 사용신고가 되는 자동차 → 등록, 검사 또는 신고시<br>・ 이전 등록을 해야 할 자동차 → 등록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 일 이내<br>・ 그 외의 자동차의 취득 → 자동차의 취득일부터 15 일 이내 |
| 4. 과세표준                | 자동차의 취득가격 (다만, 무상으로 취득했을 경우, 친족 사이에 행해지는 매매등과 같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을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가격에 의한다)                                                                                                                                                                                              |
| 5. 세율                  | 자가용 자동차 5%(원칙 3%)<br>※ 2003년 4월1일 ~ 2008년 3월 31일까지의 잠정 조치<br>영업용 자동차 및 경자동차 3%                                                                                                                                                                                                         |
| 6. 면세점                 | 50 만엔 (원칙 15 만엔 )<br>※ 2003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까지의 잠정 조치                                                                                                                                                                                                                             |
| 7. 용도                  | 도로에 관한 비용(도로특정재원)                                                                                                                                                                                                                                                                      |
| 8. 교부금                 | 도도부현에 납부된 세액의 100분의 95중 10분의 7을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의 연장 및 면적에 안분해 교부.<br>정령 지정 도시에는 100분의 95중 10분의 3에 정령 지정도시가 관리하는 일반 국도 및 도부현도의 연장 및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교부                                                                                                                          |
| 9. 세수입<br>(2004년도 결산액) | 4,509억엔                                                                                                                                                                                                                                                                                |

## 7. 경유인수세

| 항목                    | 내 용                                                                                              |
|-----------------------|--------------------------------------------------------------------------------------------------|
| 1. 과세 주체              | 도도부현                                                                                             |
| 2. 과세 객체              | 원매업자 또는 특약 업자로부터의 경유의 인수로, 해당 경유의 현실적으로 납입을 수반하는 자                                               |
| 3. 납세의무자              | 원매업자 또는 특약 업자로부터 현실적으로 납입을 수반하는 경유의 인수를 행하는 자                                                    |
| 4. 과세표준               | 경유의 수량                                                                                           |
| 5. 세율                 | 일정 세율<br>1킬로리터당 32, 100엔<br>(2008년 3월 31일까지의 잠정세율. 원칙 15, 000엔 )                                 |
| 6. 용도                 | 도로에 관한 비용                                                                                        |
| 7. 교부금                | 지정시를 포괄하는 도도부현은, 경유 인수세의 세수입의 90 %를, 그 도도부현 및 지정시가 각각 관리하는 일반 국도 및 도도부현도의 면적등에 근거해 안분하여, 지정시에 교부 |
| 8. 세수입<br>(2004년도 결산) | 10, 999억엔                                                                                        |

## 8. 입탕세

- ① 과세 주체 : 광천 목욕탕 소재의 시정촌(2004년도 과세 단체수 : 1,154 단체)  
※ 광천 목욕탕 : 온천법에 의한 온천을 이용하는 목욕탕
- ② 과세 객체 : 광천 목욕탕의 입탕 행위
- ③ 납세의무자 : 광천 목욕탕의 입탕객
- ④ 세율 : 표준 세율(1명 1일 150엔)
- ⑤ 용도 : 환경위생 시설, 광천원의 보호관리 시설, 소방 시설 그 외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에 필요로 하는 비용 및 관광의 진흥(관광 시설의 정비를 포함)에 필요로 하는 비용
- ⑥ 징수 방법 : 특별 징수
- ⑦ 세수입 : 242 억엔 (2004년도 결산액)

#### IV. 맺는 말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60% 수준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은 열악한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는 세외수입이나 탄력세율의 적용 등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국가 및 지방의 정부간의 재원배분의 재조정 등이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으나 현실화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나아가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법정외보통세 및 법정외목적세제도 그리고 지방소비관련세제의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확충 논의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법정외세 제도 도입을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신세원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비관련세제의 강화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구조 및 조세체계에 보다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과 과세자주권의 제고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